

#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개인지방소득세의 발전방안



최병호 (부산대학교 교수)

- 1.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세 확충
- 2. 주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위주의 지방세 확충







# 01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세 확충

# ■ 핵심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의 추진

## ○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4대 복합 ·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

-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'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'을 문재인정부의 4대 복합·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
- 관련 공약에 따르면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는 등 재정분권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
- ·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,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,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을 추진함
- · 그 외 영유아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등의 보편 복지사업의 국비부담을 높이고, 기존의 매칭 펀드 방식의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함

### ○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비중 확대를 위한 현실적 접근

- 지방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충, 과표확대와 세율인상, 새로운 지방세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-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삼을 때, 22.7%인 지방세의 비중을 30%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수는 71.2조원에서 94.1조원으로 약 23조원이나 증가되어야 함
- 이렇게 볼 때,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소득세,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임

# ■ 지방세 비중 확대의 의미

- 재정분권의 이론은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이나 총량보다 세율, 과표 및 세목설정 등에서 지방 의 과세권을 강조
  - 과세권은 지방세의 가격기능 작동을 위한 필요조건이며,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때 비로소 지방세 부담과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 간 연계가 형성되어 재정분권의 경제적 목표인 효 율적인 지방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
  - 즉 재정분권의 이론에 의하면 지방세가 한계적 의미에서 가격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면 지방세의 비중은 중요치 않음





## ○ 지방세 확충은 재정분권의 이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적 자율권 향상이 목표

- 지방분권이 재 시행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며, 결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음
- 이런 현실 하에서 지방에 대한 정부의 이전재원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를 늘이는 것이 중앙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시키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

# 02 주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위주의 지방세 확충

# ■ 지방자치제도 재 시행 이후 지방세 확충의 경험

- 1990년대 초 이후 지방세 확충에 관해서는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, 다음과 같은 성과 를 얻음
  - 지방세목 신설 및 과세대상 확충 성과는 다음과 같음
    - · 1991년에는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,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중 기를 새로 포함시켰으며, 1992년에는 지역의 부존자원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개발세를 신설함
    - · 1994년에는 마권세를 경주·마권세로 확대 개편하면서 과세대상을 승마투표권에서 경륜과 경정의 투표권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, 1995년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종합체육시설회원권, 상속재산 등을 추가함
    - · 2001년에는 한미통상협정에 따른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가 도입됨
    - · 2002년에는 경주·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과세대상을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으로 확대함
    - · 2006년에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였으며, 또한 2014년에는 지역자원시설 세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을 추가함
  - 한편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경험은 지방교육세 신설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국한됨
    - · 2001년에는 기존의 교육세 중에서 지방세목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던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명칭을 변경함





- ·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5%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으며, 2014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11%로 인상하였는데,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 로 이루어진 순수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실적임
- 2010년에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을 지방세체계 내에 처음 도입하였으며, 2014년부터 국세 소득 세와 법인세로부터 부분적인 독립세로 개편한 것도 주요 성과임
  - ·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, 동법에 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탓에 정부가 주도하는 법인세제개편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을 갖추게 되었 으며, 지방세수는 상당히 늘어남

# ○ 이처럼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지방세 과세대상 확충 실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실적은 제한적임

- 지방세 과세대상 확충의 경우는 실적은 더러 있으나, 세수 측면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
- 반면 지방소비세의 경우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는 지방세수를 상당히 증가시면서 지방세 비중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

# ■ 지방세의 비중을 30% 또는 40%까지 높이는 것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매우 개혁적 인 변화

### ○ 지방세 비중 추이: '2할 자치' 주장의 근거

- 1995년에 21.2%로 출발하였던 지방세의 비중은 1990년대 말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에는 18.1%까지 낮아졌으며,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21~23%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함
- 2014년에 지방소비세율이 11%로 높아지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세 비중은 2014년 23,1%, 2015년 24,6% 등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
- 그 후 2016년에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2.1%를 기록하였으며, 2017년에는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비중은 22.7%를 나타냄
- 평균적으로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(결산 기준)이 21.8%를 기록하였으며, 2017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21.9%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른바 '2할 자치' 주장의 근거가 됨





#### <그림 1> 국세와 지방세 세수 및 지방세 비중 추이



주: 1) 국세는 2016년까지는 결산, 지방세는 2015년까지는 결산, 2016년은 최종예산임. 2) 2017년의 국세와 지방세는 예산임.

자료: 국가통계포털; 국회예산정책처, 2017 경제 · 재정수첩, 2017; 행정자치부, 지방자치단 체통합재정개요, 2016년, 2017년.

# ○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비중 증가 가능성

- 2017년 예산에 반영된 국세와 지방세 세수는 각각 242.3조원과 71.2조원이며, 전체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22.7%에 달함
-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만약 지방세의 비중을 25%로 높인다면 지방세수는 약 7.2조원 증가해야 하며, 30%로 높인다면 약 22.9조원이 증가해야 함
- 또한 지방세의 비중을 40%로 높인다면 지방세수는 지금에 비해 무려 54.2조가 증가한 125.4조 원이 됨

#### <표 1> 지방세 비중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액

(단위: 조원)

	2017년 예산		지방세 비중 목표				
	2017년 예산	25% (증감액)	30% (증감액)	40% (증감액)			
국세(A)	242.3	231.5 (-7.2)	219.5 (-22.9)	188.1 (-54.2)			
지방세(B)	71.2	78.4 (+7.2)	94.1 (+22.9)	125.4 (+54.2)			
총 조세(C)		313.5					
B/C	22.7%	25%	30%	40%		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2017 경제·재정수첩; 행정자치부, 2017년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를 이용하여 계산함.





-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방세수 증가가 요구됨을 고려하면, 주요 국 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, 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은 대안임<sup>1)</sup>
-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에는 지방소비세 6조 2,961억원, 지방소득세 12조 2,700억원이 각각 세입으로 반영되어 있음
- · 만약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률을 20%로 높이는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%씩을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이양한다면 지방소비세는 11조 4,475억원, 지방소득세는 24조 5,400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여 지방세수는 모두 17조 4,214천억원이 늘어남
- · 여기에 주세의 지방세 이양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은 29.35%로서 30% 가까이 높아 지게 됨
- 지방세의 비중을 30%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은 매우 개혁적인 변화로서 실행가능 상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하며, 지방세제를 포함하여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등 추가적인 제도개편 과제를 안고 있음

# 03 개인지방소득세의 양적 확충과 제도개편 과제

# ■ 개인지방소득세 양적 확충에 따른 제도개편 과제

- 개인지방소득세의 양적 확충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경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 편이 동시에 필요함
  - 첫째, 세율구조의 변경은 개인지방소득세제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제임
  - 둘째, 개인지방소득세의 양적 규모가 늘어날 경우 세수 증가분의 자치단체별 귀속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
  - 셋째, 개인지방소득세의 양적 확충과 함께 비과세·감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

<sup>1)</sup>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라는 측면에서 지방세로서의 적정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.





# ■ 편익과세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비례세율구조로의 전환

-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방세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득이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상당히 연계되기 때문임
  -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탄력적이 아니라면 현재의 누진세율구조는 비례세 율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
  - 나아가 소득의 지역간 편중이 상당히 심한 현실을 고려하면, 비례세율구조로의 변경은 개인지 방소득세의 세수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

## ○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험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<sup>2)</sup>

-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삼위일체개혁으로 불리는 재정분권개혁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이양, 지방교부세 개혁 및 국고보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세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 세원을 이양하는 동시에 누진세였던 개인 주민세를 비례세로 변경하는 개혁을 채택함
- 2006년에는 세원이양과 관련한 세법개정이 있었으며, 2007년부터는 소득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과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단일 비례세율화를 통한 세원의 지방이양이 진행됨
- 〈표 2〉에서 보듯이, 소득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6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개편하면서 높은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은 인상됨

#### <표 2> 3위 일체 개혁과 소득세제 및 개인주민세제(소득할)의 개편

	-						
		개혁 이전	개혁 이후				
	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	Ε			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		
					과표	세율	
	과표	세율			0~195만엔	5%	
국세	0~330만연	10%			195만엔~330만엔	10%	
· 소 <del>득</del> 세	330만엔~900만인	1 20%			330만엔~695만엔	20%	
	900만엔~1,800만인	30%			695만엔~900만엔	23%	
	1,800만엔 이성	} 40%			900만엔~1,800만엔	33%	
					1,800만엔 이상	40%	
	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				단일비례세율 구조(세율 10%)		
	71.77		세율				
지방	과표 	시정촌민세	도부현민세	계			
소득세	0~200만엔	3%	20/	5%	도부현민세 4%		
	200만엔~700만엔	8%	2%	10%	시정촌민세 6%		
	700만엔 이상	10%	3%	13%			

자료: 이현우(2011)의 관련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

<sup>2)</sup> 이 부분은 최병호 외(2013)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.





- 개인주민세 소득할은 초과누진세율 방식에서 10%의 단일비례세율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, 이 과정에서 총 3조엔의 세원이 국세에서 지방으로 이양됨
- 도도부현과 시정촌간의 세원배분은 세원이양이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과 연계된 점을 고려하여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액을 기초로 10%를 도도부현민세 4%, 시정촌민세 6%로 결정함(이정만, 2008).<sup>3)</sup>

# ■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증가분의 자치단체별 귀속 방식에 대한 검토

## ○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충과 세수의 지역간 격차 확대 가능성

- 소득수준의 지역간 격차 때문에 지금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의 지역간 격차는 지방세 전체의 격차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, 세수가 양적으로 확충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로 인해 세수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
- 그 대안으로는 세수증가분을 지방소비세와 같이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안, 공동 세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

# ○ 그러나 지방세 확충의 필요성과 확충된 세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상충적인 논리가 충돌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

- 이 문제는 지방세 확충과 함께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넓이와 깊이를 반 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
-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배분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지출책임의 배분임을 반영한다면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일부 지출책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가사무적 성격을 지니는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며, 내국세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삭감이 불가피함
- 중앙-지방 관계에서는 세원이양과 재정지출책임의 이전 간에 큰 틀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 만, 개별 지방 별로, 그리고 지방 상호간에는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수 중 일부를 활용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율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수배분의 형평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
- 특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경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곳일수록 보다 큰 충격을 입으며, 이런 곳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, 개인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통하여 이런 지역의 이전재원 축소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

<sup>3)</sup>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개인주민세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를 포함하며, 그 구성요소 중 소득할 등은 도부현과 시정촌이 함께 과세한다.





# ■ 개인지방소득세의 과도한 비과세 · 감면 문제의 해소

-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실상 국세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을 취하므로 소득세 면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음
  -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,733만명 중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46.8%인 8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(2016년 국세통계연보)
  - 비록 소득세가 재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면세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되며, 개인지방소득세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임을 고려하면, 면세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중요한 제도적 흠결로 볼 수 있음
  - 따라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개편을 통하여 면세자의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<sup>4)</sup>

<sup>4)</sup> 김태호 마정화, 「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」, 서울; 한국지방세연구원, 2014.4.





# **%**○

# 연구원 소식

# >>최근 발간물

#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

(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)



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납세자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. 본 연구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・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.

# 관광세 도입 방안과 세수효과분석 연구

(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)



최근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,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 객들의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. 본 연구는 관광자원의 보존과 고부가가 치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, 그 도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관광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을 살펴보고, 이를 근거로 법제화 방안을 도출한 후, 관광세 도입의 지방재정확충 효과를 분석한다.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: (1) 관광세 신설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, (2) 법제화 방안은 '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확대' 와'

독립세로서의 신설'이 적절하다. 마지막으로 (3) 관광세 부과대상은 숙박행위로 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면서, 지방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.





#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개선

(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)



□ 목차

#### I. 서론

- 1. 연구배경 및 목적
- 2. 연구범위와 방법
- Ⅱ.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
  - 1.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상황
  - 2. 2016년 지표의 검토
- Ⅲ. 2017년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지표개발
  - 1. 2017년 지표의 체계
  - 2. 총량지표의 체계 및 분석방법
  - 3. 중점관리세목의 선정과 분석방법
- IV.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등급화 방안
  - 1. 순위선정 방안
  - 2. 종합 등급화 방안
  - 3. 2016년 데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

#### V. 결론

- 1. 연구내용 요약
- 2. 연구의 한계 및 제안사항

참고문헌





# >>연구원 동정

# 9월 재산세 광고일정

#### ○광고채널

- TV: KBS1 · KBS2 TV 캠페인 송출(전국방송)

- 라디오: 출·퇴근 시간에 청취률이 높은 TBS(수도권), TBN(전국권)

#### ○광고시기

세목	부과월	납기	광고일자 (7일간)
자동차세	6월	6.16 ~ 30	6.24(토) ~ 30(금)
1511	12월	12.16 ~ 31	12.25(월) ~ 31(일)
재산세	7월	7.16 ~ 31	7.25(화) ~ 31(월)
세면세	9월	9.16 ~ 30	9.24(일) ~ 30(토)
주민세 균등분	8월	8.16 ~ 31	8.25(금) ~ 31(목)
법인분지방소득세	4월	4월말까지신고납부	4.17(월) ~ 23(일)

## ○9월 TV스케줄(KBS1, KBS2)

매체	방송순서명 또는 SB기호	SOPT 광고구분	국명	요일	초수	시작일자	종료일자
KBS1	KBS뉴스광장 후 SPOT	7:50	전국권	금,화,수,목	40	2017.09.24	2017.09.30
	생생정보전(뉴스타임 후) SPOT	18:20	전국권	월,화,수,목	40	2017.09.24	2017.09.30
KBS2	생생정보 스페셜 후 SPOT	7:00	전국권	토	40	2017.09.24	2017.09.30
	생생정보 스페셜 후 SPOT	7:20	전국권	일	40	2017.09.24	2017.09.30

<sup>※</sup> 방송사 사정(개편/특집전용)에 의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 ○9월 라디오스케줄 시간 변경(TBS,TBN)

매체	방송순서명 또는 SB기호	국명	요일	초수	시작일자	종료일자
	07:55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후	수도권	1일1회	20	2017.09.24	2017,09.30
TBS	18:13 TBS 저녁종합뉴스 후	수도권	1일1회	20	2017.09.24	2017.09.30
	18:55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후	수도권	1일1회	20	2017.09.24	2017,09,30
	19:28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3부 후	수도권	1일1회	20	2017.09.24	2017.09.30

매체	방송순서명 또는 SB기호	요일	초수	시작일자	종료일자
11	09:30 스튜디오 ***	1일1회	20	2017,09,24	2017,09,30
	11:30 tbn 교통시대	1일1회	20	2017.09.24	2017,09,30
TBN	12:30 tbn 차차차	1일1회	20	2017,09,24	2017,09,30
	15:30 신나는 운전석	1일1회	20	2017,09,24	2017,09,30
	20:30 운전가요앨범	1일1회	20	2017.09.24	2017,09,30

<sup>※</sup> 지방본부 사정에따라 협찬 시간이 변경될수 있습니다.





# 지방세 교육

#### ○ 지방세 순회교육 (충청권)

- 일시/장소: 8.28.(월)~9.1.(금), 4박5일 /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

- 교육인원 : 174명(취득 · 재산세 99명, 체납정리 등 75명) - 교과편성 : 취득세, 재산세, 소송구제, 체납정리 분야 운영 < 지방세 순회교육 추진 일정 >

구분	충청권	경상권	전라권	수도권1	수도권2
시기(월)	8.28~9.1	9.11~9.15	10월중	11월중	12월중
장 소	대전	부산	여수	제주	삼척

※ 충청권: 8.28(월)~9.1(금), 4박5일

## ○ 9월중 교육계획 수립

- 순회교육(경상권): 9.11(월)~15(금), 210명 예정

- 특별교육(세무사·회계사과정 2기): 9.18(월)~19(화), 70명 예정

- 집합교육(세무조사과정): 9.25(월)~27(수), 70명 예정

# 한국지방세연구원 청사 이전 안내

이전일자: 2017년 9월 4일(월)

**소**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(염곡사거리)

오시는길: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 3번출구 직진 (도보 10분)

지하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 4번출구-400, 405, 421번 버스환승(도로교통공단

정류소 하차)

